

대구지방법원 2022. 10. 28 선고 2022가단10282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홍경원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9. 23.

판 결 선 고 2022. 10. 28.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의 2019. 8. 13.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D은 2011. 12. 28. C에게 1,000만 원을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위 은행은 2017. 4. 20. 주식회사 E에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E는 2017. 4. 28. 원고에게 다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소415196호로 양수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1. 17. ‘C는 원고에게 20,892,53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17.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8.9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C의 부 F은 2016. 5. 23. 사망하였는데,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인 C, G, H, 피고, I, J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9. 8. 1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는 2019. 8. 13. 무렵 이 사건 대출금 채무와 주식회사 K에 대한 카드론 채무 등의 채무가 있는 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 L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조회회답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일 이전에 성립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사해행위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이전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C, G, H, 피고, I, J은 망인의 재산을 각 1/6 지분씩 상속하였고, C는 그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다. 이는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1/6 지분에 관하여 C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아가 그 원상회복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명환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로명 주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철근콘크리트조 및 블록조 슬래브지붕 3층 공동주택
1층 내지 3층 각 179.5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 46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2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및 블록조 44.89㎡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46500분의 3875 ㎡.

